

치과 칼럼

# 잇몸질환의 치료 방법 및 실제 사례

이번호에서는 잇몸질환의 치료 방법 및 실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잇몸질환의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는 치은염(gingiviti)은 잇몸의 색깔이 붉고 간지러운 증상이 있으며, 잇몸이 붓고 잇몸에서 피가 잘 나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치주염과는 달리 잇몸뼈의 손실이 없고 치태 및 치석이 깨끗이 제거되고 홈케어가 잘 이루어지면 원래의 건강한 잇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치은염의 치료 방법으로는 잇몸 위에 보이는 치태와 치석을 깨끗이 제거해주고 치아의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 치석이 쉽게 달라붙지 않게 만들어 주는 스케일링과, 잇몸 밑에 있는 치석과 치태를 국소 마취 하에 제거해주는 치근면 활택(root planing)술이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초음파 스케일링과 수동 기구를 이용해 치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성 치주염, 중·말기 치주염의 치료에는 치주소파술(periodontal curettage)이 이용됩니다. 이는 염증이 잇몸 안쪽 벽까지 발생하여 병든 조직과 이물질을 긁어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원래의 건강한 잇몸 상태로 돌릴 수 있는 치은염에 비해 치주염으로 인한 잇몸질환은 녹아내린 잇몸뼈가 많을수록 원래대로의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잇몸이 붓고 치아가 흔들려 아파서야 내원한 환자분들 중 잇몸질환이 심해져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잇몸뼈가 부분적으로 녹아 있으며 흔들리는 정도가 미미할 땐 환자의 턱뼈를 조금 채취하여 손실된 잇몸뼈에 이식하는 뼈자가이식술이나 엠도게인(emdogain)이란 단백질 유도체를 녹아 내린 치조골의 노출된 치근 표면에 발라 새로운 뼈조직을 유도시키는 기술도 있습니다.

특히 이 엠도게인 기술은 수술 부위가 적고 시술 후 통증과 붓기도 많지 않아 최근 많이 이용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치주는 집의 기둥의 역할을 하기에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도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지지 모르듯이, 정상시의 잇몸 관리와 관심이 건강한 치아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균형 있는 식단과 금연, 올바른 칫솔질과 치실, 꾸준한 구강세척제와 워터픽(waterpik)의 사용, 그리고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엑스레이 체크업으로 오복 중의 하나인 우리의 소중한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십시오.

웰컴치과그룹 이주영 원장  
(로마린다 치대 졸업)  
Korea Town: (213) 381-2827  
Irvine: (714) 838-2875  
Fullerton: (714) 552-5373



법률 칼럼

#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 (H-1B) 신청 시 주의 사항

▶ 지난호에서 이어집니다.

### 4. 학력 인증/졸업학교의 인가 문제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학사 이상의 학위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취득된 경우는 반드시 미국 학력 인증 기관을 통하여 신청인의 학위가 미국 대학의 학사학위에 준한다는 인증서(Credential Evaluation)를 반드시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신 경우도 미국 교육부의 인가 (Accreditation)을 받은 학교인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5. 이민국 인지세와 변호사 비용

법에 따라 신청 비용은 고용주가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민국 인지세는 반드시 회사 체크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의 경우도 회사 체크로 지불하시거나 최소한 회사로 발행된 인보이스를 준비해 두셔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 6. Gap Cap 관련 문제

과거 이민국은 F-1 학생신분이나 OPT로 체류하면서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H-1B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Gap Cap이라는 장치를 통하여 9월30일까지 중간에 신분이 만료되더라도 학생은 신분을 유지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또 OPT의 경우는 일을 9월30일까지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10월1일부터 정식으로 H-1B 고용주와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우 H-1B 심사가 적체되어 9월30일을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월1일이 지나서도 심사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10월1일부터는 불법 체류/불법 노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7. 추첨에 떨어거나 거절된 이후에 대한 대비



잘 알려진 대로 많은 지원자들이 추첨 단계에서 떨어져 심사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현재 이민 신분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십시오. 현재 F-1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학교에 출석하시고 OPT가 끝나 가시는 분들은 I-20 transfer를 통하여 F-1 신분으로 가시는 것이 추첨에 떨어지거나 케이스가 거절된 이후에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셔서 미국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H-1B 비자로 입국하시는 방안도 고려하도록 하십시오.

### 8. 승인 후 실사의 문제

H-1B 승인 후에 H-1B 청원 고용주 사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신청자가 H-1B 신청서에 기입된 노동 조건(급여, 노동시간 등)하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이민국 직원들이 고용주의 사업장을 방문/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잘 유의하셔서 근무 시간, 임금 등을 잘 준수하고 근무지의 주소도 정확하게 유지하셔 합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 OC Office: (714) 522-5220  
6281 Beach Blvd., #300  
Buena Park, CA 90621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www.myevergreenschool.com

“에버그린 프리스쿨 임니다”

GOD IS LOVE 1JOHN4:19

evergreen  
PRESCHOOL • KINDERGARTEN  
SINCE 2012

“아이들이 VISION을 꿈꾸는 학교”

5882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714.670.9687